

##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제정 2025. 4. 7 조례 제324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악취방지법」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광명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악취”란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.
2. “생활악취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.
3. “사업자”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광명시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사업자의 책무)**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악취실태조사)**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**제6조(지원사업 등)**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
2.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

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3.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

4.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지도·감독)**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